# 탄 원 서

**수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귀중

**사건번호** : 2026고합549

**피고인** : 유병호 감사위원

**관련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여러분. 감사원이 공직사회를 감시하고 국민의 세금과 행정의 적정성을 지키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 역할이 엄정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감사업무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한 사람에게도 정확한 입증과 온전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 시민으로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유병호 피고인에게 제기된 의혹의 공적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뜻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비판과 형사법상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는 구별해야 하며,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과 보석 판단도 별도의 법정 기준에 따라 신중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1. 감사 방해 의혹의 대상과 피고인 개인의 행위를 구별해 주십시오

공개된 기소 및 공판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있던 2023년 2~3월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들에게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공문 자료요구,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문답조사, 업체 관계자 대면조사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시를 내려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지시를 한 사실과 범죄 성립을 모두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재판에서 증명되어야 할 공소사실입니다. 어떤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누가 어떤 경로로 이를 전달했는지, 감사관들의 예정된 행위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 변경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발생했는지를 증거에 따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감사원의 조직상 지휘와 독립적인 조사 권한의 경계를 살펴 주십시오

감사원법 제27조는 감사에 필요한 출석·답변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권한이 감사원 기관에 부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감사관의 모든 조사 방법이 어떠한 지휘·조정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상급자의 조직 관리 권한만을 이유로 적법한 감사활동을 임의로 봉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사무총장으로서의 조직 운영·지휘 권한, 개별 감사관 또는 감사팀의 법령·내부 규정상 조사 권한과 업무계획, 감사위원회의 심의 구조를 서로 대조해 주십시오. 감사 방법에 관한 통상적인 협의·법률 검토·업무조정인지, 아니면 법령상 허용된 자료 요구와 문답조사를 위법하게 중단시키는 행위인지 그 경계를 정확하게 가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3. 직권남용은 부적절한 지휘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및 2020도15105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판단에는 직권의 범위와 그 위법한 남용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구체화된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결과 및 인과관계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관이 원래 계획한 감사 절차가 무엇이었는지, 내부 결재와 지시의 전후를 통하여 실제 어떠한 조사권 행사에 제약이 생겼는지, 피고인에게 해당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지 세밀하게 심리해 주십시오. 감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후 평가는 중요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특정인의 고의와 직권남용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4. 공소 절차의 적법성과 사건 실체를 각각 판단해 주십시오

2026년 11월 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기재가 있고, 종합특검법 개정 시점과 증거 수집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특검 측은 종전 법률에 의해서도 적법한 수사가 가능했고 공소장 내용은 사건의 이해에 필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초·전제사실의 기재가 방대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정·삭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절차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적용된 수사권한, 각 증거의 수집일자와 방법,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방어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리해 주십시오. 절차에 관한 판단과 지시 사실·고의·방해 결과에 관한 실체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5. 신병에 관한 판단에서도 법이 정한 개별 기준을 살펴 주십시오

2026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비공개 보석심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않았으므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석은 무죄 선고와 동일한 의미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의 원칙과 예외 사유를, 제9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임의적 보석을 규정합니다. 부디 피고인 개인의 출석 가능성, 증거조사 진행 정도, 관계자 접촉과 증거보전 필요성, 조건 부과를 통한 위험 방지 가능성, 충분한 변론 준비의 필요를 객관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법률상 요건과 사건 기록이 허용한다면 적정한 조건을 붙인 불구속 재판의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6. 제도의 신뢰와 한 사람의 기본권을 함께 지켜 주십시오

감사원의 독립성은 국민이 공직사회를 신뢰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그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과 특정 피고인에게 아직 입증되지 않은 책임을 미리 지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지닌 직책에 대한 호오나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떠나, 같은 법률과 같은 증명 기준이 누구에게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 7.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역할과 결과에 맞는 양형을 부탁드립니다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된 횟수·방법·실제 영향, 피고인의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위치, 감사 결과와의 인과관계, 다른 관계자와의 책임 분담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오랜 공직 경력만으로 위법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그 반대로 사건과 무관한 정치적 평가가 양형을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른 정상자료가 사실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정확한 진상규명과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독립성을 지키려면 재판의 독립성도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부분에는 무죄를, 인정되는 부분에는 구체적인 책임에 상응하는 공정하고 절제된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또한 신병에 관한 결정도 법에 정해진 요건과 실제 위험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의 엄정함 속에서도 한 사람의 사정을 차분히 헤아리는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삼가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 _____

연락처 : _____